제41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351호)

2024.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총론 ····· 2
2. 개별법률 검토 ····· 6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6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9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0
(4) 보험업법 ····· 14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6
(6) 신용협동조합법 ····· 18
(7)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 23.

(3) 회 부 일 : 2024. 1.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 론

□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자격 부여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법률명	조항	피한정후견인 삭제대상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12조④1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이하 ‘구조조정회사법’)	§4②1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기인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4①1	○ 대부업체 대표,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4	보험업법	§84②1	○ 보험설계사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22②2	○ 신용조사회사 임직원
		§27①2	○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6	신용협동조합법	§28①1	○ 신용협동조합 임원·발기인
7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②1	○ 신용카드업자 소속 모집인
		§16의3②1	○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

□ 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은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또는 영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1]

○ 현행법은 채무자, 보험계약자, 신용카드회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와 무관한 일률적 직무배제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 배재"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년 개편되었음.

○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한정후견인을 특정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켜 개편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2]

---

1)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법제처,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소식」 12월호, 2019. 12.

[표2] 성년후견 제도 개편내용

구분		대상	행위능력
종전	금치산자	○ 심신상실자	○ 법률행위 상시 취소가능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재산 낭비 등	○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개편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원칙적 취소 가능
	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법원이 정한 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 이에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시장의 건전성·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되,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결격조항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3)]

○ 2021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조항 중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업

3) 법제처·법무부 보도자료, “법제처·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2019. 7. 9.

구조조정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여 직무수행능력 검증 및 사후퇴출 등이 가능한 직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였음.

[표3] 금융위원회 소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률

법률명	결격대상	직무수행검증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시험(§5) ○ 실무수습 연수 과정(§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임명직 임원	○ 사전적 임명절차(§4): 임명요건, 대통령 임명 ○ 사후적 퇴출조건(§10): 심신 장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 사전확인(§29①): 임명요건 ○ 사후적 퇴출조건(§29③): 파산선고 등

2. 개별법률 검토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호가목).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 사. (생 략) 2. (생 략) ⑤ · ⑥ (생 략)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4] 이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피한정후견인을 직무에서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령에서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위하여 임원의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5]하고 있으나, 교육 이수요건이 교육 시간과 여신전문금융협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회의 인증 등에 불과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자격시험 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결격사유 삭제 시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부분의 대출모집법인이 소규모로 운영[6]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임원만 선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원의 법률행위 효력[7]을 둘러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전국은행연합회**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법률관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되 직무수행능력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권의 책임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여건, 금융회사 지배구조 건전성 악화 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6) 2023년말 기준 416개 대출모집법인 중 모집인 30명 미만 소형법인이 382개(91.8%)

7)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원이 별도 인정한 경우 재산관리 등에 있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한정후견인 동의·대리를 통해 법률행위가 진행됨.

- **금융투자협회**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 시 직무수행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만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개정안은 「구조조정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발기인)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제4조(발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약정체결기업[8]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9]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기능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규정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이미 이 법은 실효가 되어 향후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므로 입법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10]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 ---------- ----------

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제6275호, 2000.10.23.) 제2조(유효기간) ①이 법은 공포후 6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 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② · ③ (생 략)	----------. ----------.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로 규정[11]한 취지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영업행위 규제 등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특성상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판단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한정후견인의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검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대부업은 인·허가에 비해 규제의 수준이 낮은 등록제로 운영[12]되고 있으며, 등록요건[13]도 자기자본 요건, 교육 이수[14] 등에 불과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15]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금융 취약계층[16]으로, 업권 특성상[17] 대부 이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부업자의 직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자격시험 등 별도의 판단 절차가 없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임원등의 경우 대부업이 대부업법의 취지[18] 및 규율에 따라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점, 현행법상 대부업은 현재 등록제로 운용되고 있어 임원 요건은 등록 시 서류 등을 통한 형식적 요건만을 점검하고 있으며, 검사 등을 통해 임원의 실질적 직무수행능력, 준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16) 2023년 6월말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는 전체의 75.1%(28개 대형대부업자 기준)

17) 2023년 6월말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9.5% 수준(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18) 사금융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동시에 경제적 약자인 사금융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

(4) 보험업법

□ 개정안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 략)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 1. 피성년후견인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은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19]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설계사의 자격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19)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개편된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상 보험설계사 등록요건[20]은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생명보험 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손해보험 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보험 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생 략)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8. (생 략)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3. ~ 8. (현행과 같음)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

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9. (생 략) ② ~ ⑪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신용조사회사의 임직원, 채권추심회사 임직원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판단능력을 지니지 못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행법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용조사회사 임직원, 채권추심회사 임직원과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조사회사 임직원, 채권추심회사 임직원과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판단능력이 필요하고, 특히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직접 채무자를 접촉하며, 변제촉구·변제금 수령 등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 1. 피성년후견인----------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피한정

후견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임.

□ 다만,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피한정후견인을 현행과 같이 조합 임원 및 발기인의 결격요건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건전성, 수익성, 위험관리 등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영업행위 규제 등을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임원에게는 고도의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신협조합의 부적절한 경영상황 발생 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여신전문금융업법

□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인과 가맹점모집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6조의3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을 모집인[21] 및 가맹점모집인[22]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신용카드업자와 카드 회원,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의 계약 체결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집인과 가맹점 모집인의 자격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도 모집인 및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도록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모집인 또는 가맹점모집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검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회원에 대한 관련법, 약관 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집인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모집인에 대한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23]하고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의 능력검증장치로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가맹점모집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능력검증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적정한 사무처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고난도 시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위장가맹점 등 불법행위 적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